

경제관계장관회의

24-20-4

(공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혁신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

2024. 10. 16.

관계부처 합동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 (요약)

I 추진 배경

- **(환경변화)** 스타트업이 기술혁신을 선도*함에 따라 대기업 등과 협업이 확대되며 혁신 BM 등 내부 기술탈취도 함께 증가

* '24년 CES 혁신상 수상의 85.3%가 벤처·창업기업('21년 23개사 → '24년 128개사)

** '23년 기술탈취를 이유로 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比 167% 증가

- **(침해형태)** 최근 기술탈취는 기존의 납품 등 거래 관계를 벗어나, 협상 등 계약이전 단계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

* (종래) "기술요구 → 거래단절 → 탈취기술 제공 → 거래처 변경 + 단가인하 등"
(현재) "미팅·협상 → 협상종료 → 유사 서비스·제품 출시 + 특허 무단선점 등"

- **(현재상황)** 스타트업은 '철저한 을의 입장'에서 협상을 추진 → 現 보호체계*는 충분한 안전 장치와 처벌 및 보상 제공이 불가능

* ▲거래 관계에 기술보호 집중, ▲NDA 등 법적의무 부재 및 ▲숨방망이 처벌 등

II 중점 추진방향

◇ (목표)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 집중지원을 통한 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

- ① **[범위는 넓히고]** 스타트업의 혁신 BM 등 내부 기술과 일정한 거래 관계 형성 이전의 협상·교섭 단계까지 폭넓게 보호

- ② **[처벌은 강하게]** 시정명령(+형벌) 도입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손해산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 피해보상 체계 구축

* (손해산정) 현행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 → 개선 좌동 + (개발비용 등 미실현 손해)

- ③ **[지원은 더하는]** 스타트업 전용 법률자문,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및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별 향상을 위한 바우처 등 지원

* 후속 특허출원 모니터링 후 모방의심 특허 선별, 전문가 진단 정보 등 제공

Ⅲ 세부 방안

1 기술보호 범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① (제도 정비) 협상 중 자발적 기술 제공과 스타트업 자금 상황 등을 고려, 現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

* (현재) 영업비밀 수준으로 요구 : 비밀관리성 + 비공지성 + 경제성 모두 충족 必

② (법적 의무) 종래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던 기술 제공시 NDA 체결 등 법적 의무*를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 (수위탁·하도급 거래에 공통) NDA 체결, 부당한 기술요구 금지, 보복행위 금지
(수위탁에만) 기술임치 요구시 불이익 제공 금지 / (하도급에만) 서면 발급

- (추가) 협상 과정의 기술요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 요구시 서면 발급과 ▲협상 종료 후 반환·폐기 의무 도입
- (적용) 수·위탁거래 관계의 위탁기업과 함께, 창업·벤처기업과 협상하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에게 의무 부과

2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① (제재 조치) '시정권고 → 시정명령(+미이행시 형벌)'으로 상향하고, 금전적 제재 검토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 (처분적 조치) 現 시정권고 + '시정명령 → 불이행 → 언론공표 + 형벌 부과'

② (손해액 산정) 양도·판매 등에 따른 실손해와 함께 기술개발 투입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 제도 개선

* (현재) 실손해에 따른 시장교환가치 → (개선) 실손해 + 기술개발 원가비용

③ (징벌적 손해배상) 투자 협상·교섭 등 계약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

- NDA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가중 요소에 추가

- ④ (통합 구제) 부처별로 산재하는 피해구제* 수단을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 이첩' 등 연계 창구 마련

* 경찰청(형법), 특허청(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 문체부(저작권법) 등

3 스타트업 보호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① (기술보호 바우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한도(+1천만원)와 보조율(+10%)을 확대하고, 보호 수준 상승률에 따라 추가* 지원

* 기본 한도/보조율 : (초보^{45점+}) ~3천/80%, (유망^{45~75점}) ~5천/60%, (선도⁷⁵⁺) ~7천/50%

** 전년 대비 보호수준 점수 상향에 따른 추가 지원 : 15점↑ 2천만원, 30점↑ 4천만원

- ② (스타트업전용 법률자문) NDA 계약 과정의 독소조항 제거 등 보호전략 수립의 ▲신설예방자문(3일) → ▲심화컨설팅(초동+분쟁대응) 집중 지원

* 신설 : PRE-인큐베이팅 단계 스타트업 내부 기술보호 관리체계 집중 지원(+3일)

- ③ (스타트업 실태조사) 민간·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창업기업 (예 : VC 투자 + 창업지원 수혜기업)도 조사 대상에 추가

* (현재) 연구소 보유 기업 등 → (추가) 일정한 투자·지원을 받은 혁신 창업기업

4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① (핵심기술모방 조기경보)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분석 → 정보 제공 後 전문가의 ▲침해판단 및 대응까지 연계 지원

* 스타트업이 보유한 임치기술, 특허 등을 분석 후, 유사 특허출원 여부 수시 조사

- ② (초동대응) 별도의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와 법원에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 도입

* 직권조사 절차 : 익명제보 접수 → 사건분류 → 예비검토 → 직권조사 추진

** 침해의 금지, 예방과 함께 물건폐기, 설비제거 등을 가처분 형태로 법원에 청구

- ③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및 ▲알선을 지원하고, 1인 조정부를 통한 ▲직권조정 절차 신설

* 전문가가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先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체계도

기술보호 저하요인

1 좁은 보호범위, 법적 안정성 부족

- 보유 기술이 CCTV·접근제한 등 비밀관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보호대상에서 제외
* (현재) "비밀관리성 +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을 모두 갖춘 영업 비밀 수준으로 요구
- "철저한 음의 입장"에서 협상 과정에서 NDA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 요구가 곤란
* 수·위탁 등 일정한 거래 관계에서만 NDA 의무화

- (자료요구)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내부의 핵심 기술·기술 정보를 구두로, 무분별하게 요구
- (자료거부) 기술교한 사실을 남기기 위해 서면발급과 NDA를 요구하더라도 거부하거나 기피
- (자료보유) 협상 종료 이후에도 별도의 반환·폐기 의무가 없어 기술탈취 위험 요소가 잔존

2 고질적인 송방망이 처벌 문제

- 수위탁·하도급 등 일정한 거래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
* 수위탁(30가지 거래유형)의 일부인 하도급거래(7가지)에만 적용
- 양도·판매 등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만이 보상 가능하여, 본격 시장진출 전이거나 신기술일 경우 적절한 손해 보상이 불가능
* (현재) 실제 발생한 피해만 인정(수익접근법 적용)

구분	현행	
산정대상	① 개발투입비용	② 양도판매비용
청구비용	2억원	2억원
산정방식	기술개발원가	시장교환가치
인정여부	× (불인정)	○
인정손해	6천만원(②) * 법원 평균 인용률 30% 적용 시	

3 분쟁 초기단계의 신속한 대응체계 부족

- 보복 조치 등이 두려워 적극적인 신고를 주저
* 현행법은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 시에만 조치 가능
- 행정조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피해 확산을 막을 별도의 조치 수단이 부재
-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분쟁보다는 신속한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

기술보호 강화방안

1 촘촘한 방화벽 구축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 법적요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외부유출을 방지해야 할 기술이라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법적 요건 검토
- 기술요구는 서면으로만, 협상단계부터 NDA 체결과 협상종료 시 기술 반환·폐기도 의무화

협상 단계	기술 요구시	① 요구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시 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
	기술 제공시	② 비밀유지의무, 계약위반 시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 NDA 체결 의무화
협상종료시		③ 제공받은 기술을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내 반환·폐기토록 의무화



2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 투자·공동연구 등을 빌미로 협상단계에서 기술을 탈취할 경우, 시정명령·형벌과 과징금까지 부과
- 시장 활동 등이 부족한 신기술일 경우라도 투입된 기술개발 노력(시간·비용)에 비례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액 현실화
* (개선) 기술개발 투입비용도 인정(원가접근법 추가)

구분	개선(안)	
산정대상	① 개발투입비용	② 시장판매비용
청구비용	2억원	2억원
산정방식	기술개발원가	시장교환가치
인정여부	○ (인정)	○
인정손해	2.6억원(①+②) * 법원 평균 인용률 30% 적용 시	

3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피해확산 방지

- 누구든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별도의 신고 없이도 착수할 수 있는 직권조사 도입
- 조사, 손해배상소송 등 사후 조치에 앞서 피해 확산 방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 도입
* (금지청구권 개요) 침해의 금지·예방과 함께 물건폐기, 설비제거 등을 가처분 형태로 법원에 청구
- 조정 전문위원 도입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법원연계 및 소액사건일 경우 직권으로 조정

순 서

I. 추진배경	1
II. 현 상황 진단 및 평가	2
III. 추진전략 및 목표	7
IV. 보호·구제 강화방안	8
1.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8
2.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10
3.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13
4. 피해확산 방지 기반 구축	15
V. 향후 추진계획	17

1. 추진 배경 : “왜 스타트업 기술보호인가?”

-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이라는 엔진을 탑재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등 시장의 게임 체인저(Game-changer)로 성장
 - 과거 CES(국제가전박람회)는 대기업의 무대였으나, '24년 혁신상의 85.3%를 벤처·스타트업이 차지('21년 23개사 → '24년 128개사)
-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BM을 보유함에 따라, 탈취 시 잠재적 이익이 커 스타트업 기술침해 사건 확대 추세
 - 주로 대기업과 투자 등의 협상 과정에서 특허가 아닌 핵심 자산의 대부분인 BM(비즈니스모델) 등 내부 기술탈취에 집중
 - * (사례) 대기업 L사는 P사에 공동개발 제안 후 유사 제품을 국제전시회에 출시
 - ** 국제박람회(CES) 혁신상 및 국내 아이디어 대상 수상업체 등이 피해기업에 포함



- 스타트업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투자를 제한하며, 심각할 경우 폐업에 이르는 등 혁신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한 기업조차 매출액 감소(36%), 폐업(13%) 등을 경험
 - 인력(평균 2.5명)과 자금(평균 3.5억원)이 부족한 대다수의 기술 스타트업은 수익 창출(메인 사업)에 집중하며, 기술보호는 후순위
 - * 현장 의견 : “투자금으로 월급주는 판에 보호시스템 구축비용(약 1억원)은 큰 부담”
- ➔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성장 등을 위한 정책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

☞ 스타트업의 혁신 씨앗이 안전하게 성장토록, 보호범위는 넓히고, 처벌수위는 올리며, 지원은 집중하는 강력한 기술보호 정책 추진

II. 현 상황 진단 및 평가

1 스타트업의 현재 : 혁신 주체로써 대기업의 협업 파트너로 성장

- **(혁신 주체)** 벤처·창업기업이 우리 경제의 ▲많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며 엔진 역할 수행





* 일반기업 대비 고용 증가율 : 벤처·창업 기업은 3배 ↑, 피투자기업은 12배 ↑

** 매출액 대비 R&D 비율 : 대기업의 2.6배, 중견기업의 4.2배, 중소기업의 6배

- 스타트업이 디지털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매출*과 시장을 선도하는 사례 다수 발생

* 매출액 증가율(22년 기준) : 대기업(-19.8%), 중소기업(3.4%), **벤처기업(11.9%)**

사례1 : 당근마켓	사례2 : 토스(TO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기반 국내 중고시장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 송금서비스(핀테크기술)를 통해 금융시장의 혁신 주도 

- **(대기업과의 관계)**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대기업과 기술 협업 기회가 지속적으로 증가

* 삼성전자는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18년부터 5년간 304개 스타트업과 협업·투자

- 실제 AI·딥테크 분야의 혁신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시장을 리드하며, 대기업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영향력 증대

<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협업(사례) >

대기업	스타트업	협업 사례
 HYUNDAI	▶ 포티투닷, 보스반도체 등	▶ 차량용 AI칩, 자율주행 기술 개발
 NAVER	▶ 아워박스, 모라이 등	▶ 물류서비스 관련 AI 기술 개발
Samsung C-Lab	▶ 포티파이, 소서릭스 등	▶ 모바일, 헬스케어 등 기술 개발

< [참고] 스타트업의 시장 선도 및 대기업 기술문제 해결 사례 >

1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시장 패러다임 전환 사례



당근마켓

- (장점) 반경 6km 이내의 거래 방식을 채택하여 중고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간 커뮤니티 형성
- (기술) 인공지능 기술인 머신 러닝을 활용
 - ① 99.9% 정확도로 거래금지 품목 필터링
 - ② 사기 방지 알고리즘 도입
 - * 경찰청에 등록된 사기 계좌 및 휴대전화 정보 활용
- 월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1위 앱으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선도**



마켓컬리

- (장점) 신선 식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장보기
- (기술)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 ① 폐기·품질유 관리를 위한 매출·물류 알고리즘
 - ② '수확 → 저장 → 배송'의 유통 전체 과정에서 농·수산물을 저온 상태로 유지시키는 풀콜드(Full-cold) 기술
- 오후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7시까지 배송해 주는 '샛별배송' (새벽배송)을 통해 **국내 유통업계 판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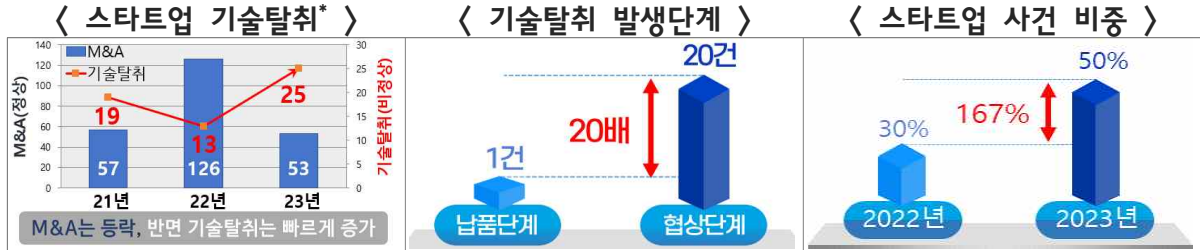
2 대기업의 기술적 난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한 사례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적 문제들을 스타트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

스타트업	주요 해결 사례
스마트물류 (스타트업 A사)	(대기업 S사) 친환경 첨단소재(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하여 물성과 차단성을 높인 고품질 친환경 밀키트 포장재 개발
미래모빌리티 (스타트업 S사)	(대기업 S사) AI 신경망 기반의 교통통합 안내 시스템을 개발하여 티맵(T-map) 기반 최적의 이동 경로 제시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B사)	(대기업 L사) 천연물의 모든 성분을 나노입자로 캡슐화하는 기술을 통해 안정성과 체내흡수율이 증가된 신소재 개발

2 기술탈취 양상 : 투자 등의 협상 과정에서 스타트업에 집중

- **(침해 현황)** 수·위탁 등 일정한 거래관계 형성 전, 대기업 등과 투자·M&A 목적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탈취가 증가



* 기술탈취를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

- **(침해 형태)** 최근 기술탈취는 종전*의 납품 등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아닌, 대기업 등과의 협상·교섭 단계에서 복잡·다양하게 발생

* A/S 명목으로 받은 기술을 납품가 인하 목적으로 경쟁사에 전달하는 방식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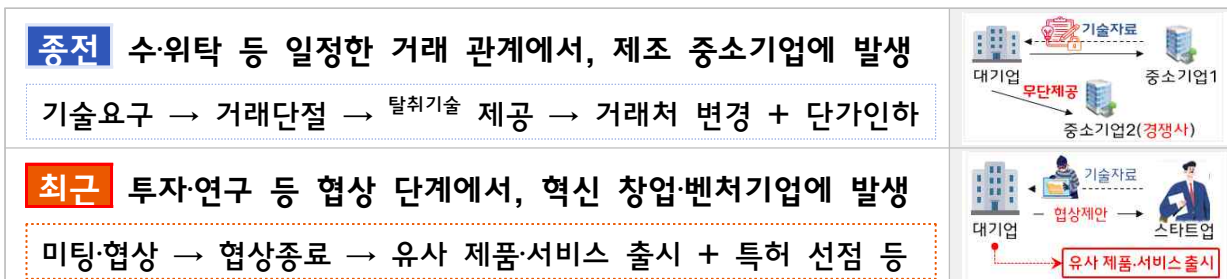
- **(최근)** 투자·입찰·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



(이재현 대구대 창업지원단장) “최근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다른 기업과 계약 과정 중에 기술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 < 제26차 민생토론회, '24.6.20. >

- ① **투자 유형** : 투자·인수를 빌미로 미팅 후 기술 컨셉을 카피하고, ▲유사 제품·서비스를 자체 출시하며 시장 진출 차단
- ② **입찰 유형** : 공동 입찰을 명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제품 생산 일부의 위탁 또는 ▲스스로 내재화 후 참여 배제
- ③ **연구 유형** : 공동 개발을 제안하며 기술검증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차례 요구하고 실증·생산단계에서 ▲공동 특허 출원 강요

< 중소기업 기술탈취 양상 변화 >



3 주요 원인 : 보호범위, 약한 처벌, 부족한 대응력, 신속 대응한계

□ (좁은 보호범위) 기술탈취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협상 과정의 최소 보호조치 요구도 곤란

○ (보호 대상) 구제를 위해 요구되는 CCTV 설치 등 비밀관리 법적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보호 대상에서 제외*

* '22.5월 이후, 비밀관리 법적 요건을 갖춘 행정조사 사건(중기부) : 21건 중 1건

○ (법적 의무) 수·위탁 등 거래관계에서만 기술교환 시 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어, 협상 단계에서는 적용 자체가 불가

- 투자 협상 시 '을의 입장'에서 NDA를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별도 조치도 불가

* NDA 요구를 거부당한 벤처기업 : 약 1,331개사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2년

** 기술 요구에 대한 서면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한 벤처기업 : 약 1,270개사

현장의 목소리

■ 기술보호간담회('23.6월) : NDA는 스타트업이 갖는 강력한 기술보호 장치이나,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먼저 NDA를 쓰자 요청하기 어려운데 현실이다.

□ (약한 처벌) 기술의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기 보다 '베끼는 것이 이득'인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기대하기가 불가능

○ (과소 배상) 기술탈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액*은 피해 상황에 비해 턱없이 부족

*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청구금액 대비 약 22.5%(인용율)인 6천만원 수준

○ (입증 곤란) 대부분의 증거를 가해기업이 보유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 피해입증이 곤란하여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

현장의 목소리

■ 설문조사(중기중앙회, '23.9월) :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들을 법원 소송에서 활용한다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정책수요조사(중기중앙회, '23년) : 별도의 법적 조치를 포기한 피해기업의 78.6%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도 응답

- (낮은 처벌율)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낮은 기소율*과 ▲높은 무죄율**로 인해 법적 억제력 또한 부족

* 기술유출 사건의 검찰 기소율(20.5%)은 일반 형사사건(41.6%)의 1/2 수준, ※사법연감
 ** 영업비밀침해 1심 형사 공판사건의 무죄율(34.6%)은 전체 무죄율(3.41%)의 10배

- (부족한 대응력) 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은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시장에 만연

-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복잡한 기술분쟁을 인력과 조직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스스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란 불가능

◇ 초기 투자단계(업력 3년↓, 투자단계 시리즈A!)는 ▲특히 부족(취득에 2년소요)과 ▲취약한 내부기술 보호조치 등으로 협업 기회에 비례하여 기술탈취 위험도 증가



* 영업비밀침해 분쟁대응 기간/비용(22년, 특허청) : 평균 14.4개월 / 114백만원
 **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전담 인력·조직 보유 현황 : 전담인력 1.5%, 전담부서 0.7%

연장의 목소리

- N사 : 대기업이 가장 원하는게 폐업이 아닐까해서 약착같이 버티고 있다.
-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23년) : 법적 대응 기업의 66.7%는 대응에 소요되는 긴 시간과 높은 비용이 조치의 어려움이라고 응답

- (신속대응에 한계) 기술침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되고, 분쟁 초기 단계의 신속한 대응 수단도 부족

* 스타트업 A사는 최초 기술미팅('21.9) 이후 약 15개월 후 기술탈취 사실 인지
 ** 33.3%의 기업이 6개월 경과 후 피해사실을 인지('23.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 조치와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손해배상 등 사후 구제 수단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에 한계

☞ 그 결과 ▲좁은 보호범위, ▲NDA 의무 등 법적 보호장치 부재와 ▲약한 처벌 등으로 자력 구제조차 시도하지 않는 자포자기 상태
 ※ 기술침해 유경험 중소기업의 43.8%는 별도 법적대응 포기('23년 중기중앙회)

III. 추진 전략 및 목표

비전	혁신 기술의 강력한 보호를 통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주체로 성장
중점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BM과 협상 단계까지로 기술보호 범위 확대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대폭 강화 ◇ 손해액 현실화를 통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구축

추진 전략

<p>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스타트업 기술보호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제도 정비 ▶ NDA 체결과 서면발급 의무화 등 협상 과정의 기술요구 절차 강화 ▶ 혁신 창업·벤처기업과 협상하는 대기업 등에 대한 법적 의무 신설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유형 정비 	<p>기술탈취 행위의 일벌백계 솜방망이 처벌 대폭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금전적조치 등 범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기술개발 투입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 되도록 손해산정 제도 개선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확대 ▶ 부처·검경 외부 연계를 통한 구제 강화 ▶ 기술탈취 피해입증 부담 완화
<p>All-Care를 위한 통큰 지원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큰지원] 스타트업 특례 도입 등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확대 ▶ [집중지원] 초기 스타트업 1:1 법률자문 신설 ▶ [연속지원] 분쟁대응부터 피해회복까지 기술 분쟁 전주기의 원스톱 지원 확대 ▶ [통합지원]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신설 	<p>기술분쟁의 신속한 해결 피해확산 방지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모방 조기경보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금지청구권 도입 ▶ 민·관 상시 정보공유 채널 구축 ▶ 익명신고 및 신고포상제, 직권조사 도입을 통해 시장감시 기능 강화 ▶ 사실조사 강화 및 직권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강화

IV.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

전략 1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제도 정비

- 협상 중 자발적 기술 제공과 스타트업 자금 상황 등을 고려, 現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
 - * (현재) 영업비밀 수준으로 요구 : '①비밀관리성+②비공지성+③경제성' 충족 필요
- 유관 법령의 보호 지원을 위한 기술의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아이디어, 성과물 / (형법) 영업상 주요 자산 등
- 비밀관리 등 법적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 사건은 수사로 연계

현장의 목소리

- Q사 : 비밀유지 등의 보안 문구가 없거나, 특허 등록이 안 된 경우라도 기술 탈취, 유출일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법적의무 및 적용범위 확대

- ① **(의무 확대)** 특정 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던 법적 의무*를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하여 협상 단계의 기술요구 절차 강화

* (수위탁·하도급 거래에 **공통**) NDA 체결, 부당한 기술요구 금지, 보복행위 금지
(**수위탁에만**) 기술임치 요구시 불이익 제공 금지 / (**하도급에만**) 서면 발급

현장의 목소리

- A사 :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NDA 체결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 B사 : 적어도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NDA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기술요구 시)** 요구 목적·대상, 비밀유지사항 및 권리의 귀속관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요구하도록 규정
 - 서면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및 “표준기술자료 요구서*”도 마련
 - * 포함사항 : 기술자료를 보유한 임직원의 명단, 목적 외 사용금지 약정서 등

- (협상종료 시)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내 제공 기술의 반환·폐기

* 기준일 : 비밀유지계약 및 발급된 서면에 기재된 "반환 또는 폐기일"

< 기술요구 절차 강화를 위한 법적 의무 예시 >

기술제공 시 → NDA체결	기술요구 시 → 서면발급	협상종료 시 → 반환폐기
<p>< NDA 계약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제공 목적 및 범위 ▪ 비밀유지의무 내용 ▪ 계약위반시 배상책임 등 	<p>< 서면 기재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 대가 및 대가지급 방법 ▪ 기술 명칭 및 범위 	<p>< 요청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반환 및 폐기 방법 ▪ 기술 반환 및 폐기 일자 ▪ 미조치 시 제재사항 등

- ② (적용 대상) 수·위탁거래 관계에만 적용되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 등과 협상하는 대기업 등에 의무 부과

< 법적 의무사항 적용 대상 예시 >

모든 양자 관계	특정 대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이유없는 기술요구 금지 ▶ 반환·폐기 요구시 미조치 금지 ▶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제공 요구시 서면발급 의무 ▶ 기술 제공 받을시 NDA 체결 의무

* 수·위탁거래의 위탁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과 협상하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 (예) 「벤처투자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창업법」 제10조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

- ③ 모태펀드 출자를 받는 VC에게는 피투자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NDA 작성을 유도*하고, 준수 시 인센티브** 부여 (자율권고)

* ('24년) 비밀유지서약 체결을 자펀드규약에 추가하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 ('25년) 모태펀드 출자 사업 참여시 우대, 제재조치 시 정상 참작 등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유형 신설

- 부당한 제3자 기술제공* 및 NDA 계약 체결 등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사용·공개 행위도 포함

* (현재) 자기 사용 목적의 침해행위만 처벌 가능



현장의 목소리

■ E사 : NDA를 체결했다는 이유로 기술탈취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계약의 신뢰관계를 깨는 행위로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략 2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1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① (시정권고 → **시정명령 + 형벌**) 시정명령 및 미이행시 형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탈취 관련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현행) 시정 권고 불이행 시 공표만 가능 → **추가 조치 불가**
 (개선) 시정권고 → **시정명령** → 불이행시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현장의 목소리

- B사 : 행정조사를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시간만 낭비하는 상황이 나온다.

- ② (**금전제재**) 수·위탁 및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과 별도의 금전적 제재 방안 검토

2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① 손해액 산정 기준 개선

- (**현행**) 양도·판매 등에 따라 발생한 실손해만 인정되어, 신기술 또는 시장 진출 전일 경우 적정한 손해를 보상받기 곤란

현장의 목소리

- 법률신문('23.5월) : 신기술이거나, 제품 출시 전이라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한 이른바 미실현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을 특정(산정)하기 어렵다.

- (**개선**) 제품 판매·양도 등에 따른 피해액과 함께 기술개발 투입 비용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 개선

* (현재)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시장교환비용) → (개선) 실손해 + **기술개발 투입비용**

손해액 변화 예시

- 기술탈취 관련 손해액 산정 기준 추가 전후 손해액 변화 사례

* (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평균 2억원, 기술탈취 관련 법원의 인정 손해액 평균 6천만원

구분	현행		구분	개선(안)	
산정대상	①개발투입비용	②양도판매비용	산정대상	①개발투입비용	②시장판매비용
청구비용	2억원	2억원	청구비용	2억원	2억원
산정방식	기술개발원가	시장교환가치	산정방식	기술개발원가	시장교환가치
인정여부	X (불인정)	○	인정여부	○ (인정)	○
인정손해	6천만원(②) * 법원 평균 인용률 30% 적용 시		인정손해	2.6억원(① + ②) * 법원 평균 인용률 30% 적용 시	

- (기대효과) **최소 4배의 기본손해액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5배) 실효성 담보 가능**

②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확대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최대 5배 배상책임*을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의 협상·교섭 단계까지 적용 확대

*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술유용 관련 5배 배상제 최초 도입('24.1월 상생협력법 개정)

- 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고려사항' 內 NDA 체결 등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가중 요소**에 반영 검토

< 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고려사항 예시 >

현행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발생 우려 인식 정도 ... ✓ <신설> ✓ 가해기업의 재산상태 ✓ 가해기업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p>가중</p> <p>감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발생 우려 인식 정도 ... ✓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 <p>좌 동</p>

③ 부처·검·경 등 외부 연계를 통한 통합구제 강화

- (부처 연계) 부처별 산재하는 피해구제 수단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고서 작성 → 이첩' 연계하는 **가칭**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구축

- (조치) 변리사(기술)·변호사(법률) 등을 통해 접수 사건의 적용 가능 법률을 검토 후 적정 부처로 신속하게 신고 연계*

* 예) 특허청(부경법·특허법), 경찰청(부경법·산업기술보호법·형법 등), 검찰청 등

** 연계 절차 : ①사건인지 → ②초동조치 → ③사건분류 → ④부처이첩 → ⑤후속조치

< (참고) 범부처 연계 창구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예시 >



【 조치사항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등 운영규정(고시)」 개정('25.상)

- **(경찰 연계)** 중기부로 접수된 기술탈취 조사 사건을 경찰 수사로 연계하는 중기부↔경찰청 기술보호 수사 패스트트랙 개설

※ 경찰청-중기부 업무협약('24.4.18)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협력**
 ▲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 치안 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 **(조사 ⇨ 수사)** 행정조사 및 법률자문 기업이 수사를 희망할 경우 피해 및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 후 경찰청 이첩

* 경찰청 수사 이첩시 지원사항 : ①수사 신고서 작성, ②피해내역 및 행정조사 자료 제공 및 ③**연계기업 요청 시** 기술보호 전문가(약 100명) 자문 지원

- **(검찰 연계)** '대기업 ↔ **스타트업**', '위탁 ↔ **수탁기업**' 관계에서 발생한 고의·악의성이 높은 중대한 사건은 검찰 고발 조치

【조치사항】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고시)」 제정('25.하)

4 **기술탈취 피해입증 부담 완화**

- 법원이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관련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 및 피해입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송부제도* 개선

* 법원 소송에 행정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피해입증을 지원**하는 제도

- 법원이 요구 시 송부 가능한 대상자료 범위를 기술의 개발·유출·교환 등 피해입증에 필요한 기록 등으로 확대

< 「법원의 자료송부요구 제도*」 개선(안) >

	현행	→	개선
(요구대상)	①손해배상청구 소송		②금지청구 소송
	< 행정조사 관련 기록 >		< 피해입증 관련 기록 >
(대상자료)	①신고인·피신고인 의견서		④기술개발 투입비용 자료
	②피신고인 조사기록		⑤기술자료 임치등록 자료
	③현장조사 수집증거 등		⑥디지털포렌식 자료
			⑦기술자료 거래증빙 자료

【조치사항】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등 운영규정(고시)」 제34조 개정('25.하)

전략 3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1 [통큰 지원]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확대

- (기술보호 바우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바우처*('24년 시범)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예산(정부안) : 18억 ('24) → 28억 ('25)

기술보호 바우처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원내용	사용한도
교육·컨설팅	보안·법률분석 및 솔루션 제공, 전문가 현장파견, 교육 지원	1천만원
보안시스템	시스템 구축, 라이선스 구입, 악성코드·랜섬웨어 SW 지원	7천만원
기술등록	기술임치, 기술교환 증거자료 보관 관련 신규·갱신 비용 지원	2백만원
정책보험	특허·영업비밀 등 침해대응 법률 비용 보장 보험 가입 비용	1천만원
분쟁대응	조정, 법률분쟁 대리인, 포렌식, 손해액산정 등 소요 비용	1천만원

- (스타트업 특례)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한도 및 보조율 확대

< 스타트업 지원금액 및 보조율 >

보호수준	보호수준 기준점수	지원금액		보조율	
		기본	확대	기본	확대
1단계	초보 : 0~45점 미만	~3천만원		80%	
2단계	유망 : 45~75점 이하	~5천만원	+1천만원	60%	+10%
3단계	선도 : 75점 초과	~7천만원		50%	

* 전년 대비 보호수준 향상 정도에 따라 추가 지원 : 15점↑ 2천만원, 30점↑ 4천만원

2 [집중 지원] 초기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강화

- (스타트업전용 법률자문) NDA 등 계약서 작성과 독소조항 검토를 위해 ▲신설 예방자문(3일) → ▲심화 컨설팅(초동+분쟁대응) 집중 지원

< 스타트업 집중 법률자문 절차(예) >

사전단계	Pre 인큐베이팅단계	분쟁대응단계(심화 컨설팅)	
자가진단(1일)	기술보호 전략수립(3일)	초동 컨설팅(7일)	대응 컨설팅(60시간)

* 스타트업의 PRE-인큐베이팅(3일) 단계에서 내부 기술보호 관리체계 등 집중 지원

- (스타트업 실태조사) 민간·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창업기업 (예 : 창업지원 수혜기업 + VC 투자)도 조사 대상에 추가

* (현재) 연구소 보유 기업 등 → (추가) 일정한 투자·지원을 받은 혁신 창업기업

3 [연속 지원] 기술분쟁 전주기의 원스톱 지원 확대

- (단기 **쟁송단계**) 기술분쟁 과정에서 겪는 증거 수집과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체계* 마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평가기관 등을 손해액 산정지원 기관으로 지정

- (단기 **회복단계**) 소송 장기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의 금전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용자·보증 등 정책자금 우대 지원

* (용자) 기술침해 피해기업 지원 요건 완화(종전 매출감소 요건 면제)

** (보증) 피해기업의 기술보증(~10억원) 보증료율 감면(최대 0.3%p)

- (중장기 **회복단계**) 과징금 일부를 **가칭** 피해회복기금으로 조성 검토

* (유사예) 응급의료기금, 식품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4 [통합 지원] 중소기업 기술분쟁 종합지원기관 신설

- (전담 기관) 기술보호 정책연구, 조사 및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는 **가칭** 중소기업기술보호원 신설을 위한 연구 추진

* 기능·역할 조직구성, 법적근거 등 전담 기관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5)

※ (가칭) 중소기업기술보호원 주요 기능

① (기능 통합) 분쟁조정위원위, 통합상담신고센터, 기술자료 임치관리·운영 등

② (기능 신설) 법제연구, 조정위 사무국, 제보센터, 조사지원기구, 시장감시 등

- (분쟁조정원) 향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정 증가 시, 중소기업 기술분쟁 사건을 전담하는 조정원 설립 근거 마련 검토

* 분쟁조정 신청(건) : ('22) 24 → ('23) 33 → ('24.5) 13 → ('24.말) 32건(예상)

전략 4 피해확산 방지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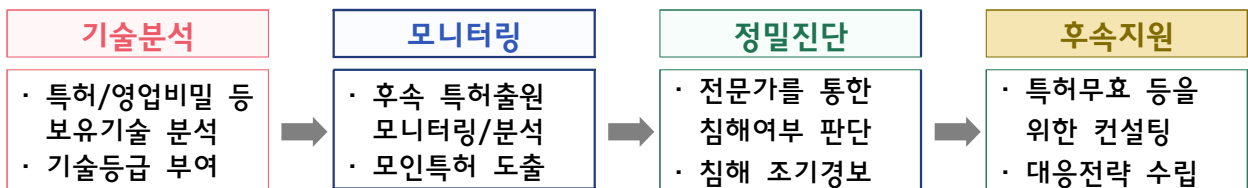
1 기술탈취 조기대응 체계 구축

- (핵심기술모방 조기경보) 혁신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분석' → 정보제공' 後 전문가의 ▲침해 판단 및 대응까지 지원

* "기술탈취 상대방이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기술보호간담회, '24.6)

**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임치, 특허 등을 분석 후, 유사 특허출원 여부 수사 조사

< 핵심기술 모니터링 및 후속지원 업무흐름도 >



- (금지청구)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술탈취 행위의 금지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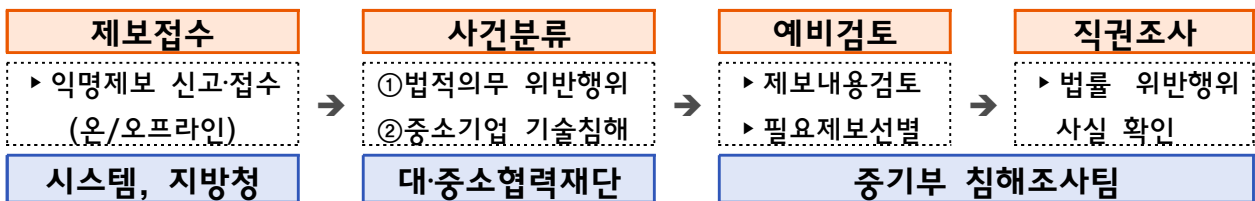
* 침해의 금지·예방과 함께 물건폐기, 설비제거 등을 가처분 형태로 법원에 청구

2 시장감시 기능 강화

- (직권조사) 피해신고 범위를 확대(피해기업 → 누구든지)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도 착수할 수 있는 직권조사 도입

- 전국 13개 중기 지방청을 오프라인 익명제보센터로 지정('25~)

< 익명제보 사건의 직권조사 절차 예시 >



- (피해신고) 거래 단절 등 보복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중소기업의 제보 활성화를 위한 익명제보시스템* 구축(기술보호울타리 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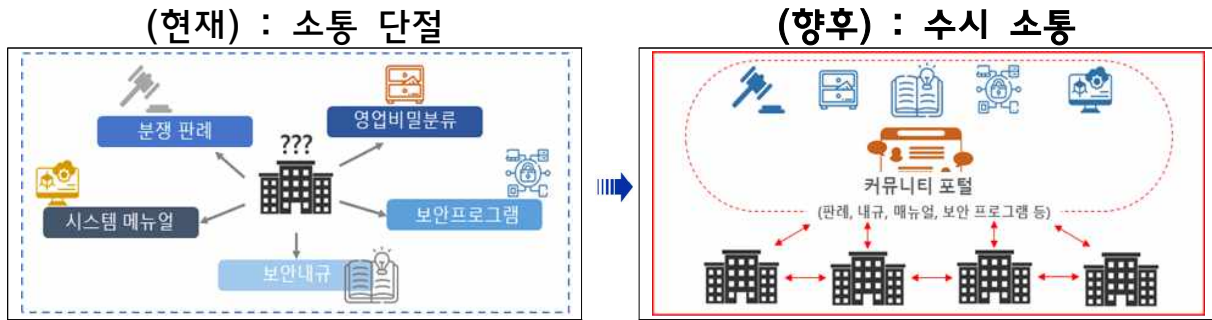
* 아이피(IP)주소, 성명, 제보내용 등 제보부터 사건처리 전 과정의 비밀성 보장

** 허위사실 등 음해성 제보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제보서식 등 강화

- **(신고포상제)** 기술탈취 관련 신고자 또는 직권조사의 핵심 증거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도 마련

* (지급 기준) 제보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 감안

- **(정보공유)** 현장의 기술보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중소기업 보안 담당자, 민간 법률 전문가 및 정부 간 수시 소통 채널 구축



3 기술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강화

- **(조사·알선 전문성↑)** 당사자 간 이견을 줄여 조정 성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통한 ▲사실조사와 ▲알선** 등 지원

* 변호사 또는 변리사 등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인력 채용

** 알선 : 전문가가 분쟁당사자 간 입장 차를 조율하여 先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분쟁조정 전문위원 주요 역할(예)

- **(사실조사)** 영업비밀, 특허 등 분쟁조정 대상기술 및 당사자 쟁점 분석 등
- **(알선업무)** 조정 전 분쟁당사자 간의 입장 차를 조율하여 사전 합의 유도
- **(법률자문)** 분쟁조정 사건 관련 판례 분석, 적용 법률의 해석 등 법무 지원
- **(정책연구)** 위원회 관련 법령, 규칙, 협약 재개정 등 조정제도 개선 연구

- **(직권조정 신속성↑)** ▲법원 연계* 및 ▲소액 등 당사자 간 이견이 적은 사건에 대한 직권조정 결정 제도(1인 조정부) 도입

* 법원 연계조정(건) : 1건('21년) → 12건('23년) / 조정성립률 : 75%(vs 非연계 47%)

- **(원격조정 접근성↑)** 지방 소재 당사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대면 분쟁조정(ODR*) 환경 구축

* ODR :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신청 간소화, 절차 편의성 제고)

【조치사항】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고시)」 개정('25.상)

V. 추진 일정

주요 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스타트업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제도 정비		
• 現 비밀관리 요건 등 고려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24.下~	중기부
•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술보호 규정 이관·정비	'24.下~	중기부
② 법적 의무 준수사항 확대 및 신설		
• 모든 양자 관계로 NDA 체결 의무 확대	'24.下~	중기부
• 기술요구 시 서면발급 의무 신설	'24.下~	중기부
• NDA 체결 및 서면발급 요구 기피·거부 금지	'24.下~	중기부
• 협상종료 시 기술 반환·폐기 의무 신설	'24.下~	중기부
• 벤처캐피탈 자펀드 규약 內 NDA 규정 신설	'24.下	중기부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유형 신설	'25.上~	중기부
2. 솜방망이 처벌 수준 대폭 강화		
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시정권고 및 미이행시 형벌 규정 도입	'24.下~	중기부
• 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조치 방안 마련	'24.下~	중기부
②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손해액 산정기준 개선	'24.下~	중기부, 법원행정처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확대	'24.下~	중기부, 법원행정처
•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 고려사항 신설	'24.下~	중기부, 법원행정처
③ 부처·검·경·법원 등 외부연계 강화		
• 부처간 기술보호 연계창구(Gateway) 마련	'24.下	중기부, 관계부처
•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개정	'25.上	중기부
• 중기부-경찰청 기술보호 패스트트랙 구축	'24.下	중기부, 경찰청
• 중대 사건에 대한 검찰 필수고발 절차 마련	'24.下~	중기부, 검찰
④ 피해입증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법원의 자료송부요구 제도 개선	'24.下~	중기부, 법원행정처

주요 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3.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① 기술보호 바우처 확대		
• 기술보호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25~	중기부, 관계부처
• 스타트업 지원 특례 신설	'24.3월 기 완료	중기부
② 스타트업 전용 법률자문 서비스 신설		
•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 신설	'24.下	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대상 확대	'25.上	중기부
③ 쟁송부터 피해회복 단계까지 원스톱 지원		
• 쟁송단계 피해입증 지원 법적 근거 마련	'24.下~	중기부
• 피해회복 지원 법적 근거 마련	'24.下~	중기부
• (가칭) 기술탈취 피해회복기금 신설	'26.~	중기부
④ 중소기업 기술분쟁해결 종합지원기관 신설		
• 기술분쟁 종합지원기관 신설 연구용역	'25.~	중기부
• (가칭) 중소기업기술보호원 신설 검토	'26.~	중기부
•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원 설립 검토	'26.~	중기부
4.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① 기술탈취 조기대응 체계 구축		
• 기술탈취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서비스	'24.下	중기부
•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 제도 도입	'24.下~	중기부, 법원행정처
② 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 기술탈취 신고 대상범위 확대	'24.下~	중기부
•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 구축	'25.下~	중기부
• 전국 지방청을 익명제보센터로 지정	'25.下~	중기부
• 직권조사 제도 도입	'24.下~	중기부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24.下~	중기부
• 민관 기술보호 소통 채널 구축	'25.上	중기부, 관계부처
③ 분쟁조정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신속성 제고		
• 전문위원 도입, 사실조사 및 알선 절차 신설	'24.上~	중기부
• 기술분쟁 직권조정 제도 도입	'24.上~	중기부
• 원격 기술분쟁조정 근거 규정 및 기반 마련	'25.上	중기부